지식경제부 보도자료	http://www.mke.go.kr
'12년 4월 17일(화) 10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식서비스투자팀장 이종석(2110-3871), 김영지사무관(3876)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(2023-7305), 강준 사무관(7297)	

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시화 된다

-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

□ 법률상 허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설요건 및 허가절차 등 규정 미비로 실제 설립이 어려웠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.

○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경제자유구역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자리매김함은 물론, 향후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17일 해외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참여 의무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이하 '경자법 시행령')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○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이 당초 설립허용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, 개정안은 다음의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.

①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

② 외국면허 소지 의사·치과의사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할 것

③ 개설 허가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

□ 보건복지부는 4월 중으로 동 개정안에 따라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.

* 보건복지부령(안) 주요골자 (☞ 참고2)

□ 지난 2002년부터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과 외국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 세계적 수준의 병원과 연계하여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해 왔다.

○ 그러나, 지난 10년 간 단 한 개의 외국의료기관도 지어지지 않았다.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과 허가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하여 외국인 투자자 및 해외병원 참여에 주 된 걸림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.

□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이후 미비된 요건·절차와 외국의료기관에 필요한 특례규정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따른 우려 등으로 법 개정작업이 장기간 지연 되었고

○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, 작년 10월부터 입법예고,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상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하위규정 개정 등을 통한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·절차 구체화를 추진하게 되었다.

□ 이번 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령 마련으로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 될 경우, 우선 인천 경제자유구역(송도)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전망이며,

○ 이를 통해,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연간 6만 여명에 가까운 국내외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.

□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은 "조만간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병원과 연계된 국제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"고 하면서,

○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"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규모를 국내 총 병상수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

<참고> 1.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
2. 보건복지부령안 주요골자
3. 외국의료기관 설립 관련 Q&A

참고 1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2(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「상법」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)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「상법」상 법인의 자본금의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. ② 제1항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「상법」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	제20조의2(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)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"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.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.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외국의 의사·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할 것 ②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「상법」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참고 2 보건복지부령(안) 주요골자

<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·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>

◇ **(기본방향)**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적구성 등 협력체계를 구체·명확화

◇ **(운영협약)** 외국법률에 의한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**외국의료기관의 장**과 **진료관련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1/2 이상을 협약병원 소속 의사로 한다**는 내용 포함

< 외국면허 소지자 확보 >

◇ **전체 의사·치과의사의 10% 이상**을 **외국면허 소지자**로 하며 **개설 진료과목당 외국면허 소지 의사·치과의사**를 **1명 이상 배치**

<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 >

◇ 병원허가 신청 전에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, **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**에 따른 **사전심사**를 규정하여 **허가 전** 외국의료기관 **개설요건 충족여부 확인**절차를 구체화

참고 2 외국의료기관 설립 관련 Q&A

1 외국의료기관은 투자개방형병원(영리병원) 전국 확산의 시발점?

□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주환경 조성 차원에서 허용된 사항이므로 투자개방형병원의 전국 확대와는 별개 사안임

□ 투자개방형병원(영리병원)의 전국 도입은 現 의료법의 체계(비영리 법인 중심)를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,

○ 정부 내부(복지부, 재정부)의 異見 조정, 의료계, 시민단체 등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순 확대논리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

□ 다만,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는 여론 등을 감안,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수를 국내 총 병상수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

2 외국의료기관의 고가 의료비가 국내 병원들의 의료수가 상승욕구를 부추겨 전반적으로 국내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

□ 외국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병원보다 전반적인 의료비가 다소 비쌀 것으로 예상

□ 다만, 국내 병원 등과의 잠재적 경쟁관계 감안 시 지나치게 높은 진료비 책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

○ 국내 거주 외국인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므로 의료서비스 비용이 높을 경우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기존 국내 의료기관을 두고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예상

○ 의료관광객의 경우, JCI* 인증을 받은 국내병원(15개) 뿐만 아니라 태국·싱가포르의 대형병원과 경쟁 불가피

* JCI : 미국의 8천여개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JCAHO(Joint Commission Accreditation of Health Organization)가 설립한 국제 의료기관 인증기구인 JCI가 해외 의료기관의 의료질관리와 환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제도

3 국내 우수 의료인력이 외국의료기관에 집중함으로써 국내 공공의료 분야 의료인력(의사)에 공백 발생?

□ 국내 전체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, 외국의료기관으로의 인력유출로 인한 국내 의료인력 공백 발생 가능성은 미미

<국내 전체 의료계('10) 대비 송도국제병원의 비중>

구분	병상 수	의사 수
국내 전체 (A)	53.8만개	10.1만명
송도국제병원 (B)	600개	256*명
비율 (B/A, %)	**0.1**	**0.3**

* 종사 의사의 일정부분(10% 이상)을 외국면허소지 의사로 두도록 한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 및 후속 복지부령안('12.6월 시행 예정)에 따라, 전체 285명 중 외국면허 의사 29명 제외한 숫자

□ 또한,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는 여론 등을 감안,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수를 국내 총 병상수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